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방송공사의 보유자산 활용 근거 마련 >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27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방송공사의 보유자산 활용 근거 마련(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

다. 회 부 일 : 2024.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는 라디오방송 · 텔레비전방송 · 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매출규모는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 · 보급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KBS는 전국에 여러 방송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한 방송사업 재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국방송공사의 보유자산 활용 근거 마련(안 제54조제1항제 11호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현재 「방송법」(이하 “법”) 제54조제1항¹⁾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업무에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추가하여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第54條(業務) ① 公社는 다음各號의 업무를 행한다. 1. ~ 10. (생략) <u><신설></u> <u>11.</u> (생략)	第54條(業務)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u> <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

1) 「방송법」 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이하 생략)

현 행	개 정 안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법 제54조제1항²⁾은 KBS의 업무를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KBS의 업무는 라디오방송의 실시(제1호), 텔레비전방송의 실시(제2호),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제3호) 등임.

□ 현행법상 KBS의 재원은 법 제56조³⁾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2) 「방송법」 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3) 「방송법」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36조(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와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KBS의 보유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령상 규정은 없고, 다만 법 제60조4)에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또는 목적 변경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첫째, 과거 KBS가 자산 개발 시도를 여러 번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방통위와 감사원이 KBS가 자산을 활용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 점을 감안하면, KBS가 자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

○ 법 제54조제1항제4호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및 제11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익사업 허용 가능성은 직접 방송시설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정되는

3. 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4. 협찬 수입

5.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6.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7. 사채 또는 차입금

8. 전년도 이월금

9.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방송법」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것으로 보이므로, 재원 조달 목적의 비교적 넓은 범위의 수익사업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2016년에 방통위가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음.

<2016년 KBS 보유자산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논의>

- (2016. 9.) KBS, ‘공사 자산을 활용한 수입’을 재원 항목에 추가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
- (2017. 3. 24.)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상임위원간 의견차이로 재논의를 위해 접수를 보류
 - 방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9호에 ‘부동산 활용 사업에 따른 수입’을 신설하고 사업 요건을 건축물의 노후화·손상 등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등으로 한정
 - (찬성 의견) 사업 목적·방식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국내외 사례에 비추어 부동산을 활용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
 - (반대 의견) 수신료 인상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 이전에 부동산 활용에 따른 수입사업 추진은 부적절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또한, 감사원도 2007년 KBS 자산 개발에 대해 KBS의 업무에 자산 개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개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음.

<과거 KBS 본사개발 추진 사례>

구분	사업명	세부 내용	진행 경과
13, 14대 박권상 사장 (2000년)	멀티미디어센터	연구동 부지에 제작센터 건립	경영회의 후 중단 (규모, 재원 보강)

구분	사업명	세부 내용	진행 경과
16, 17대 정연주 사장 (2007년)	C3 프로젝트	별관 상업시설 개발, 연구동 제작시설 건립	이사회 의결 후 감사원 지적 중단 (업무에 없고, 자원 활용계획 부적절)
20대 김환영 사장 (2013년)	연구동 재건축	연구동 재건축	수신료 인상 후로 추진 연기
21대 조대현 사장 (2015년)	보도센터 건립 + 자료동 이전	KBS홀 광장 보도센터 건립, 기존 자료동은 공원화	보도 외 제작 공간 확보 문제로 중단
22대 고대영 사장 (2016년)	미래방송센터	연구동 재건축, 본/신 관·별관 재개발	감사원 지적(자원 계획) 및 환경변화 로 설계 중단
23대 양승동 사장 (2019년)	KBS 세종 설립	국회 이전 관련 KBS 세종 검토	세부 계획 검토 미 진행
25대 김의철 사장 (2022년)	종합공간계획	본사 중장기 마스터플 랜 수립	추진 방향에 대해 이사회와 이견으로 미착수

자료: KBS.

□ 둘째, KBS는 2023년에 5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산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 허용되면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

○ KBS의 당기순이익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부터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5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5) 이하 내용은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2024.8.)」을 참조하였음.

<최근 5년(2019~2023년) KBS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기순이익	16	327	393	-118	-553

자료: KBS

- 2023년에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한 원인은 수신료수입(6,851억 원, 전년대비 83억원 감소), 방송광고수입(1,967억원, 전년대비 675억원 감소) 등 감소로 총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⁶⁾임.
- 이 중 수신료 수입은 1981년에 수신료 금액이 2,500원으로 책정된 후 조정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6천억원 대로 그 규모가 유사하게 유지되는 수준임.
 - 수신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수신료승인안⁷⁾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 수신료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6,080억원, 2019년 6,705억원, 2023년 6,851억원(2019년 대비 2.2%, 2014년 대비 12.7% 증가)으로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유사하게 유지되는 수준임.
- 광고수입의 경우 광고시장의 침체에 따라 광고수입은 급감하는 추세로, 2023년 광고수입(1,967억원)은 2019년 2,548억원 대비 22.8%, 2014년 5,223억원 대비 62.3% 감소하였음.

6) KBS, 2024.5., 「제51기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pp.1~2.

7) 2007년(4,000원안), 2011년(3,500원안), 2014년(4,000원안), 2022년(3,800원안)

<2023년 KBS 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	2019년	2023년		
			수입액	2019년 대비	2014년 대비
1.수신료수입	6,080	6,705	6,851	2.2	12.7
2.광고수입	5,223	2,548	1,967	-22.8	-62.3
3.콘텐츠판매수입	2,182	3,148	3,780	20.1	73.2
4.기타수입	2,133	2,165	1,646	-24.0	-22.8
소계	15,618	14,566	14,244	-2.2	-8.8

자료: KBS

- 이에 따라 KBS의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둬으로써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도 있음.
- KBS 역시 현재 직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KBS가 국가기관 방송사로서 공적 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KBS 입장>

- 최근 공사의 수입은 매년 감소 추세이며 특히 수신료의 경우 1981년 이래 금액 인상 없이 동결되어 있고, 또한 방송광고 시장의 위축과 방송시청 형태 등의 변화로 공사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 수입 및 콘텐츠 수입 등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여 있음
- 개정안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 확보를 통해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공사의 국가 기간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함

- 다만, KBS가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방송법」 제43조제1항⁸⁾

의 설립목적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제1항⁹⁾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에 대해 나열하면서 제7호에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음.

□ 참고로, 소관부처인 방통위는 KBS가 보유자산의 활용 등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공적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보유자산의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수용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6

8) 「방송법」 제43조(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

9)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